

「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5년 6월 4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('22.12월)에 따라 지방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을 통한 의정비 예산낭비를 방지하고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청렴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강화(제6조제3항 신설)
의원이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: 징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1/2감액 지급(이미 지급한 경우 감액분을 환수)

3. 개정조례안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: 2025. 6. 4. ~ 6. 9. (5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9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 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: 061-830-6067, 팩스: 061-830-5595

- 붙임 1.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 | 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 액하되,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.</u> |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성명(단체명): (서명 또는 날인)
- 주 소 :
- 전 화 번 호 :

| 자치법규안 내용 | 찬 성 여 부 |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|
| | 찬성 | 반대 | | |
| | | | | |